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칠레공화국 보건부간의 식품안전에 대한 협력 약정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칠레공화국 보건부(이하 “양측”이라 한다)는,

평등·상호주의와 호혜에 기초하여 양측의 식품안전 및 품질 기준에 대한 정보교환, 경험공유 및 조화를 촉진하기를 희망하고

식품안전 및 품질기준 분야에서 양측의 협력과정을 개발하기를 기원하면서

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.

1. 기본원칙

양측은 이 약정과 각측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안전 및 품질기준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려는 의사를 확인한다.

2. 협력분야

이 약정에 따른 협력 분야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.

가. 식품안전, 위생기준 및 규격을 규율하는 관련 법령의 제·개정, 집행 및 기술에 관한 정보 교환

나.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정보 교환

다. 국외공인검사기관 활용 및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제 활성화

라. 식품의 정보 교환과 현지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공무원 및 전문가의 상호 방문

마. 각측의 가용 예산·자원의 범위 내에서 심포지움 개최 및/또는 공동 훈련과정 마련

3. 협력위원회

가. 양측은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진행을 검토하는 등 이 약정과 관련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나. 위원회는 각측에서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된다.

다. 위원회의 회의는 서울과 산티아고에서 교대로 연례 개최된다. 다만, 양측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라. 양측은 협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각 회의별 의제와 구성을 사전에 결정한다.

마.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측은 그들 각자의 연락관을 지정한다.

4. 재정약정

가. 각측은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에 관련되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한다.

나. 일방측의 요청에 따라 타방측이 제공하는 원조의 비용은 그 요청측이 부담한다. 다만, 양측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정보의 공개

양측은 이 약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진행과정에서 타방측이 전달하는 비밀정보를 그 타방측이 서면으로 수권하는 경우에만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배포한다.

6. 이견의 해결

이 약정의 해석 및/또는 이행에 있어서 양측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측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7. 효력 및 종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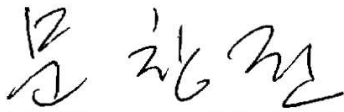
가. 이 약정은 나중의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그 이후 5년간 유효하다. 이 약정은 일방측이 이 약정을 종료할 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, 향후 5년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.

나. 이 약정은 양측의 서면에 의한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.

다. 이 약정의 종료는 그 종료 통보시 진행 중인 이 약정에
다른 협력활동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이 약정은 2006년 6 월 20 일 산티아고에서 동등히 유효한
한국어본, 서반아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각 2부씩 서명되었다. 해석
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.

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을
대표하여



문 창 진
식품의약품안전청장

칠레공화국 보건부를
대표하여



Dr. María Soledad Barría Iroume
보건부 장관

